

실의결 - 년 순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72	20	1980. 9. 16	총재 김 준 심

의 안 "한국은행 여신업무이철" 일부개정

의결사항 1. 한국은행의 여신업무이철을 별안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2. 실시일자 : 1980. 9. 16

3. 경과조치 : 별 안

제외관계 법구조항 한국은행법 제72조

제외취지 금융기관 여신금리의 인하를 유도하여 기업 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함

참고사항 1. 제의관계 법조항

한국은행법 제 72 조.

(1)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(2)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2. 첨부물

가. 1980. 6. 5 제 12차 년 위원회

의결내용

나.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추이

다.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

라. 금융기관 주요여신업무이율 개정(안)

"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" 일부개정 (안)

	구분	현행	개정 (안)
재할인	상업어음	우대직격업체 발행, 양도배서 인수어음 : 연 19.5%	우대직격업체 발행, 양도배서, 인수어음 : 연 17.5%
		기타업체 발행, 양도배서, 인수어음 : 연 20.0%	기타업체 발행, 양도배서, 인수어음 : 연 18.0%
담보	수출어음	① 용자기간 135 일 이내분 : 연 10.0%	① (현행과 같음)
		② "수출금융규정" 제6조 및 "외화포시 공급금융 규정" 제4조에 의한 90일 이내 용자기간 해당물목의 당해 품목별 소정장사기간 이내분 : 연 10.0%	② (현행과 같음)
대출	외화포시 공급어음	③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화포시 건설공사로서 용자기간 180 일 초과 1년 이내분 및 선박 또는 철도차량으로서 용자기간 180 일 초과 270 일 이내분 : 연 18.0%	③ (현행과 같음)

구	분	현	행	개	정	(단)
담		㉔ 전 ㉕ ㉖ 항 이외의 청자기간 135일 초과분 ; 연 20.0 % ㉗ 대응수출 또는 공휴불이행분 연 24.0 % 이자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따 로 정할 수 있다.	㉔ 전 ㉕ ㉖ 항 이외의 청자기간 135일 초과분 : 연 18.0 % ㉗ (현행과 같음)			
대	농수산물수출준비어음,	추정 제2조 제2항 "가" 호 대출어음 : 연 10.0 % 추정 제2조 제2항 "나" 호 대출어음 : 연 10.0 % 다만, 대응수출신용장 수령 불이행분에 대하여는 연 24.0 % 이자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따 로 정할 수 있다.		(현행과 같음)		

구	분	현	행	개	정	(안)
당	공업, 수산업, 회원사업어음 (농협 및 수협취급분)	연 10.0 %			(현행과 같음)	
	근주산업어음	연 18.0 %			연 17.0 %	
	주요원자재 수입어음	연 18.0 %			연 19.0 %	
	기	다	어	음	연 26.0 %	다만 금융통화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용자대상은 연 20.0 %
보						
대						
출						

2530

3~



(경과조치)

1. 1980. 9. 15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중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은 어음기일까지, 수출어음, 외화환사공급어음, 군수산업어음, 주요원자재수입어음 및 기타어음 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동 담보어음기일까지 종전이율을 각각 적용한다.
2. 1980. 6. 4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기타어음 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동 담보어음기일까지 1980. 6. 4 이전 이율을 적용한다.
3. 1980. 1. 11 이전에 이미 취급한 농업, 수산업, 호수어업어음, 군수산업어음 및 기타 어음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동 담보어음에 관련된 금융기관대출의 당초 약정기한 까지 1980. 1. 11 이전 이율을 각각 적용한다.